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2차년도) 협약서

○ 협약기간 : 2008. 6 . 1 ~ 2009. 6 . 30 (13개월)

○ 협약당사자

(갑) 경상북도지사

(을) 대구대학교 총장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산업계 수요 및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비 지급 및 관리,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목표) (을)이 작성하여 보조금 청구시 (갑)에게 제출할 사업계획서에 제시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제3조 (사업비 신청 및 지급)

- ① (을)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총10,000천원을 지급한다. 단, (갑)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지원액 및 지원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①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출연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타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일반조건 및 (갑)의 승인을 받은 용도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의 사용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을)은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사업과 관련된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법률, 예규 및 경상북도 관련 조례, 규칙 등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점검 등)

- ① (갑)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관계 서류의 열람,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센터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또는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등)

- ① (갑)과 (을)은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은 전담기관과의 체결한 협약 내용에 변경(협약의 해지 포함)이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 ① (갑)은 센터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을)이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정산은 기성부분에 한한다.

③ 기타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사업비 잔액처리) (을)은 사업기간이 완료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해지, 또는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 및 협약의 준수) (을)은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산업자원부의 제 규정과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11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 (기타)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8년 8월 일

(갑)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을)대구대학교 총장

이 용 두

